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10월 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근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1776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 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2. 은행(「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 가. 「은행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 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 제9호나목 및 같은 항 제10호나목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②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로서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수의 합계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가. 해당 주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인 은행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된 이사의 수

나. 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그 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인 은행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그 이사의 수

2. 해당 은행지주회사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경영전략·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자산운용 등 업무집행에 관한 은행지주회사등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주주가 되려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2. 예금보험공사

3. 한국정책금융공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었던 자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해당 은행을 자회사등으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인에 관한 사항

2.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주주 또는 사원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4.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해당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부터 5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
3.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 재무제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그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주식을 취득하려는 은행지주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95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4 본문 중 “30일”을 “60일”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2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말한다.

제6조의6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6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의7을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①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1.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 경우 해당 기준에는 의결권 행사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기금등이 보유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수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식을 보유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주로서 취득한 정보는 주주권 행사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3.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금등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는 비금융주력자가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별표 2의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비금융주력자는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제6조의3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주식을 취득하려는 은행지주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의4제3항에서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지주회사의 감자(減資),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되는 경우

2. 비금융주력자가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인 비금융주력자가 같은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4. 비금융주력자가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

급하게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 법 제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부터 5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8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⑩ 법 제8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⑪ 제2항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관

여하는 경우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이며, 해당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났을 것
2.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출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은 제외한다)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 1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하여 그 자산 운용대상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 또는 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출자하여 2개 이상의 투자대상기업에 실제 투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 중 투자된 가액은 제외한다)이 3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법 제8조의5제3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2.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  
3.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및 사원(주주 및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내역

4. 그 밖에 법 제8조의5제2항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④ 법 제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지주회사등 사이에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호·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을 “법 제38조제4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법 제57조의3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57조의3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57조의3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④ 법 제57조의3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등 및 기금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이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p>

구 분	요 건
	<p>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구 분	요 건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	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대주주가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가. 인가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구 분	요 건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7. 대주주가 사모투자 전문회사등인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3호나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5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표 제1호다목 또는 제5호라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인 경우에는 이 표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 2.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3. 이 표 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2]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

구 분	요 건
1.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등 및 기금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등)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구 분	요 건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	가.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거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지주회사일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대주주가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구 분	요 건
7.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인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5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비고

-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표 제1호다목 또는 제5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이 표 제7호의 요건

을 적용한다.

2. 이 표 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요 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 다.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45조의2제1항에 적합할 것 라.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구 분	요 건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	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아닐 것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기금등인 경우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외의 내국인인 경우	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분	요 건
법인인 경우	<p>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 집단(법 제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 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p> <p>라.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p>가. 주식취득 자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p> <p>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p>가. 외국금융회사이거나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p> <p>나. 자산총액·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용도가 높을 것</p> <p>다.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p> <p>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마.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구 분	요 건
7.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인 경우	<p>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마. 제5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4호가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다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라목 및 제6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비고

1. 자본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따라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3. 이 표 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외국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이 표 제7호를 적용할 때에는 이 표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비금융주력자

나.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다만, 서로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이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 2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승인 요건(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기관(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p>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p> <p>나.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45조의2제1항에 적합할 것</p> <p>다.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서 적합하고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p> <p>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을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제외한다.</p>



구 분	요 건
2. 비금융주력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이거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비금융주력자가 제1호, 제2호 및 제6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 라.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비금융주력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주식취득 자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구 분	요 건
	나.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

## 비고

1. 자본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따라 산정

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3. 이 표 제6호를 적용할 때 이 표 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비금융주력자

나.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다만, 서로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이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유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법률 제9788호, 2009. 7. 31. 공포, 10. 10. 시행)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경영 관여의 요건(영 제3조의3, 영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신설)

1) 개정 법률에서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임원 선임 등의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로 규제를 받도록 함.

2)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인 은행의 이사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와의 합의 등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대표자·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은행지주회사 경영 관여의 요건으로 구체화함.

나.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영 제7조 신설)

1) 개정 법률에서는 기금등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기준,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화함.

다.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승인 요건(영 제9조제2항 신설)

- 1)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독립적·중립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경험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2)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이며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을 것 등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